|  |  |  |
| --- | --- | --- |
| **1.6.6 수입제한 폐기물 심사허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環辦〔2006〕8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청)：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제한 고체폐기물(아래 “수입폐기물”이라고 약칭) 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수입폐기물 심사허가 체계를 규범화하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불법 판매 등 위법행위 두절하고 수입폐기물 가공이용 과정 중 환경오염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폐기물 수입항구 심사허가 관리 진일보 강화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반드시 엄격히 <제한수입폐기물 심사허가관리 강화에 관한 해당문제 통지> (환경 사무청 2004-100호)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입항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수입 항구의 심사허가는 근처 원칙을 실시한다. 흑룡강, 길림, 내몽골, 산서, 섬서, 녕하, 감숙, 청해, 신강, 서장, 사천, 중경, 운남, 귀주, 호북, 호남, 강서, 안휘, 하북, 하남, 북경 등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각급 환경 보호부문은 다른 성(자치구, 직할시) 연해항구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신청을 심사할 때 수입폐기물 가공이용단위의 이용능력, 이용 상황 기록과 원거리 항구 수입폐기물 원가결산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 합격 후 신청한 자료를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 받을 수 있다.  2. 수입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을 가공 이용하는 단위에 대한 감독관리 진일보 강화  1) 단위 등록이용관리를 강화한다. 2006년 9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이용 단위는 반드시 국가 해당요구에 따라 소재지 시급 환경보호부문에 등록 등기를 해야 하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수입 이용단위 등록표>>에 기입해야 한다(시행)(첨부 1 참고)  　 2) 이용 상황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 가공이용단위에서 등록을 마친 후 경영 기록부를 준비하여 수입폐기물 (이용 불가능한 잔여물의 방향 포함)의 실제 수입, 운송, 이용과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이용단위는 실제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날로부터 분기별 경영기록부의 주요사항을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이용 상황 등록표>에 기입하여 등록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단서를 보존하여 문의할 때 제공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최소 3년이다.  　 3)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 가공이용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단위의 이용능력과 이용상황, 오염방지조치에 대하여 일상적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각지 (시)급환경보호부문은 매년 이용단위 등록상황, 이용상황 등록 및 감독검사 상황을 성급 환경보호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성급 환경 보호부문에서는 일괄하여 환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보총국은 각지 이용단위등록, 이용상황 등록 및 감독검사 사업의 전개 상황에 대하여 통보한다.  3.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위조, 변조,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진일보 강화  합법적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받은 가공이용 단위에서 수입 폐기물에 대한 가공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환경보호부문 특히 연해항구 소재지의 지방 환경보호부문은 현지 경찰, 세관, 품질검사 등 해당 부분과 함께 본 지역 내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위조, 변조, 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하여 확실히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위조, 변조, 판매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공시해야 한다.  첨부 : 1.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 이용단위 등록표  2.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이용 상황 등록표  국가환경보호총국  2006년 8월 1일 |  | **关于加强限制进口类废物审批**  **管理的通知**  环办[2006]89号    各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局（厅）：  　　为进一步加强对限制进口的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以下简称“进口废物”）的环境管理，规范进口废物审批，杜绝非法倒卖固体废物进口许可证等违法行为，防止进口废物加工利用过程造成环境污染，现通知如下：  　　 一、进一步加强对废物进口口岸地的审批管理  　　各级环保部门必须严格按照《关于加强限制进口类废物审批管理有关问题的通知》（环办〔2004〕100号）的规定，加强对废物进口口岸地的管理。废物进口口岸的审批实行就近原则。黑龙江、吉林、内蒙古、山西、陕西、宁夏、甘肃、青海、新疆、西藏、四川、重庆、云南、贵州、湖北、湖南、江西、安徽、河北、河南、北京等21个省（自治区、直辖市）的各级环保部门在审查从其他省（自治区、直辖市）沿海口岸进口废物的申请时，应加强对进口废物加工利用单位的利用能力、利用状况记录和远距离口岸进口废物成本核算可行性的审核；审核合格后，方可将其申请材料报送我局审批。  　　二、进一步加强对进口废塑料和废五金电器类废物加工利用单位的监督管理  　　（一）加强利用单位备案管理。自2006年9月1日起，进口废塑料和废五金电器类废物的利用单位，必须按照国家有关要求，向所在地地（市）级环保部门办理备案登记，填写《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利用单位备案表》（试行）（见附件一）。  （二）加强利用状况备案管理。进口废塑料和废五金电器类废物加工利用单位已办理备案的，应当建立经营记录簿，如实记载实际进口、运输、利用和  处置进口废物（包括不可利用残余物的流向）的情况。利用单位应当自首次实际进口固体废物之日起，每季度就其经营记录簿的主要事项填报《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利用状况备案表》（试行）（见附件二），报送备案机关，同时应保留相关单据以供查询，保留期限至少为3年。  　　（三）加强监督和检查。各级环保部门应当加强对进口废塑料和废五金电器类废物加工利用单位的监督管理，对利用单位的利用能力和利用情况、污染防治措施开展经常性检查。各地（市）级环保部门应当每年将利用单位备案情况、利用状况备案情况及监督检查情况报送省级环保部门，省级环保部门汇总后报送我局。我局将对各地开展利用单位备案、利用状况备案及监督检查工作的情况进行通报。  　　三、进一步加大对伪造、变造、倒卖固体废物进口许可证行为的打击力度  　　为确保进口废物在合法取得固体废物进口许可证的加工利用单位进行加工利用，各级环保部门，特别是沿海口岸所在地的地方环保部门，应当会同当地公安、海关、质检等有关部门，加强对本地区内伪造、变造、倒卖固体废物进口许可证等违法行为的查办打击力度。对查实确有伪造、变造、倒卖固体废物进口许可证行为的，应依法追究责任并予以公告。  附件：1．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利用单位备案表（试行）  　　 2．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利用状况备案表（试行）  　　 国家环境保护总局办公厅  　　二○○六年八月一日 |